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10일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9월 1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,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(안 제5조 및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조 및 제9조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,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) 기본원칙(안 제3조)
- 라) 의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마) 지원신청(안 제5조)
- 바) 지원범위(안 제6조)
- 사) 보조인력 채용(안 제7조)

#### 3) 검토 의견

- 의정활동 보조인력 · 보조기구 · 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2024년 8월 기준 전국 39개(서울 7개 포함)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중이며,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여짐.

- 우리구 의회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,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